

“영조물배상공제” 사고시 보상한도 안내

[참 고]

영조물배상공제 보상한도액표

[대인배상 보상한도액표]

(단위: 백만원)

1인당 1사고당	5	10	20	30	50	75	100	150	200	300	400	500
5												
10												
20												
30												
50												
75												
100												
200												
300												
500												
750												
1,000												
1,500												
2,000												
3,000												
4,000												
5,000												
6,000												
7,000												
8,000												
9,000												
10,000												

대물배상 보상한도액표 (1사고당)

2
5
10
20
30
50
100
200
300
500
750
1,000
1,500
2,000
3,000
4,000
5,000
6,000
7,000
8,000
9,000
10,000

[청소년수련시설 및 어린이놀이시설의 대인배상 보상한도액표]

(단위: 백만원)

1인당	80	100	150	200	300 (수련시설만 선택가능)
1사고당	1사고당은 무한대 (∞)로 1인당만 선택하여 등록				

[구내치료비 특약 보상한도액표]

일반시설				체육시설		교육시설
1인당	1사고당	1인당	1사고당	1인당	1사고당	1인당, 1사고당
50만원	1백만원	3백만원	3백만원	50만원	5백만원	1백만원
	3백만원		5백만원			
	5백만원		1천만원			
	1천만원		2천만원			
	2천만원		4천만원			
	4천만원					
1백만원	1백만원	4백만원	4백만원	1백만원	5백만원	2백만원
	3백만원		5백만원			
	5백만원		1천만원			
	1천만원		2천만원			
	2천만원		4천만원			
	4천만원					
2백만원	2백만원	5백만원	5백만원	1백만원	5백만원	3백만원
	3백만원		1천만원			
	5백만원		2천만원			
	1천만원		4천만원			
	2천만원					
	4천만원					

※ 체육시설과 교육시설 이외는 일반시설의 구내치료비담보 보상한도액을 적용, 수련시설과 실내(실외)어린이놀이시설도 일반시설의 보상한도액을 선택하며, 단, 어린이놀이시설 중 유치원의 어린이놀이시설은 교육시설의 보상한도액을 적용.

[도로 특약 보상한도액표]

구 분	1사고당/총보상한도
1.특별시도로	1천만원/2천만원
2.광역시도로	2천만원/5천만원
3.지방도(농어촌도로등)	3천만원/5천만원
4.시·군·구도로	5천만원/1억원
	1억원/2억원
	1억원/3억원